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1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이철호)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14.1.1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조례 중 관련 규정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 등록분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표준세율과 동일 적용(안 제5조)
 - 최저세액 변경 : 3,000원 → 6,000원
 - 면허분 : 50% 인상(안 제7조)

현행	
구분	세율
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



개정	
구분	세율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의 최저세액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그 밖의 등기”를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각종 인허가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종별로 50%씩 각각 인상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면허세의 최저세액과 세율을 50%씩 각각 조정 및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에 따라 구 세입이 약 11억원¹⁾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등록면허세 등록분 : 1억원, 등록면허세 면허분 : 10억원 (※ 해당부서 추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5 호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14.1.1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조례 중 관련 규정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 등록분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표준세율과 동일 적용 (안 제5조)

- 최저세액 변경 : 3,000원 ➡ 6,000원

○ 면허분 : 50% 인상 (안 제7조)

현행		➡	개정	
구분	세율		구분	세율
제1종	45,000원		제1종	67,500원
제2종	36,0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27,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18,0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2,000원		제5종	18,000원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2.20.~2014.3.12,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천원”을 각각 “6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3천원”을 “6천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세 율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제10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을 “해당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된 때”를 “증감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축한 때”를 “개축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증감한 때”를 “증감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변경된 때”를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을 “해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멸실되었을 때”를 “멸실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을 “해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멸실되었을 때”를 “멸실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세율) <u>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u>3천원</u> 미만일 때에는 <u>3천원</u>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3. (생략)</p> <p>4. 그 밖의 등기: 건당 <u>3천원</u></p>	<p>제5조(세율) <u>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u>----- -----.</p> <p>1. ----- ----- <u>6천원</u> ----- - <u>6천원</u>-----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u>6천원</u></p>																								
<p>제7조(세율) <u>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45,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2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36,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3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27,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4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18,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5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12,000원</u></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제1종	<u>45,000원</u>	제2종	<u>36,000원</u>	제3종	<u>27,000원</u>	제4종	<u>18,000원</u>	제5종	<u>12,000원</u>	<p>제7조(세율) <u>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67,5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2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54,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3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40,5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4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27,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5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u>18,000원</u></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제1종	<u>67,500원</u>	제2종	<u>54,000원</u>	제3종	<u>40,500원</u>	제4종	<u>27,000원</u>	제5종	<u>18,000원</u>
구 분	세 율																								
제1종	<u>45,000원</u>																								
제2종	<u>36,000원</u>																								
제3종	<u>27,000원</u>																								
제4종	<u>18,000원</u>																								
제5종	<u>12,000원</u>																								
구 분	세 율																								
제1종	<u>67,500원</u>																								
제2종	<u>54,000원</u>																								
제3종	<u>40,500원</u>																								
제4종	<u>27,000원</u>																								
제5종	<u>18,000원</u>																								
<p>제10조(세율) <u>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p> <p>1. (생략)</p> <p>2. 건축물</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u>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p>	<p>제10조(세율)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법 제13조제5항</u>----- ----- -----</p>																								

현행	개정안
<p>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다. (생략)</p> <p>3. 주택 가. <u>법 제13조제3항제1호</u>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p> <p>4. 선박 가. <u>법 제13조제3항제5호</u>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생략)</p> <p>5. (생략)</p> <p>제12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u>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u>증감된</u> 때</p> <p>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u>개축</u>한 때</p> <p>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u>된</u> 때</p> <p>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u>된</u> 때</p> <p>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p>	<p>----- 나.·다. (현행과 같음)</p> <p>3. ----- 가. <u>법 제13조제5항제1호</u>----- ----- 나. (현행과 같음)</p> <p>4. ----- 가. <u>법 제13조제5항제5호</u>----- ----- 나.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12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 <u>해당할</u> ----- ----- ----- ----- ----- ----- ----- ----- ----- -----</p> <p>1. ----- -- <u>증감된</u> 경우</p> <p>2. ----- <u>개</u> <u>축한</u> 경우</p> <p>3. ----- ----- <u>된</u> 경우</p> <p>4. ----- ----- <u>된</u> 경우</p> <p>5. -----</p>

현행	개정안
<p>서 비과세대상으로 <u>된 때</u>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u>증감한 때</u> 7.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u>변경된 때</u></p>	<p>----- 된 경우 6. ----- ----- 증감한 경우 우 7. ----- ----- --- 변경된 경우</p>
<p>② (생략) 제1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때에는</u>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噸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선박을 <u>취득한 때</u> 2. 선박이 매도되거나 <u>멸실되었을 때</u>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u>사용하게 된 때</u>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u>된 때</u>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u>된 때</u></p>	<p>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 <u>해당할</u> ----- ----- ----- ----- ----- ----- ----- ----- ----- ---. 1. 선박을 <u>취득한 경우</u> 2. ----- <u>멸실된 경우</u> 3. ----- ----- <u>된 경우</u> 4. ----- --- <u>된 경우</u> 5. ----- --- <u>된 경우</u></p>
<p>제14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때에는</u> 항공기의 종류, 명</p>	<p>제14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 <u>해당할</u> -----</p>

현행	개정안
<p>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기를 <u>취득한 때</u>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u>멸실되었을 때</u>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u>된 때</u>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u>된 때</u>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u>된 때</u> 	<p>-----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기를 <u>취득한 경우</u> 2. ----- <u>멸실된 경우</u> 3. ----- ----- <u>된 경우</u> 4. ----- ----- <u>된 경우</u> 5. ----- ----- <u>된 경우</u>